##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7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김정재·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유영하·유용원 윤상현·윤영석·윤재옥 윤한홍·이달희·이만희 이상휘·이성권·이종박 이인선·이종배·이종욱 이월규·이현승·인요한 임이자·임종득·정성국·정연욱 정점식·정희용·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인의 조정훈·조지연·주진우 주호영·진종오·최보윤 추경호·한기호·한지아 의원(10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74조제7항 본문 중 "36주"를 "32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6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	
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신 설>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
	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
	<u>시간</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7)
또는 <u>36주</u> 이후에 있는 여성 근	<u>32주</u>
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	
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	
용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